

第51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3月25日(月) 午前10時 開議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城北區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城北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議) 1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2面
3. 서울特別市城北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3面

(10時05分 開議)

○委員長 徐化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委員長 徐化錫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북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擔當官室長 李鍾淳 민원담당관실장 이 중순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송 련 전문위원으

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 조례안 개정한 적이 있죠?

○民願擔當官室長 李鍾淳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학력이라든지 이런 주관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적으로 공무원이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신고하는 사람이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학력으로 기재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이것은 아마 작년 '95년 6월 5일날 대법원에서 시행규칙이 개정돼가지고 작년에도 다뤘던 건데 작년 해택기간이라든가 해택지역이라든가 해택사유, 신고의

무자 학력이라든가 신고의무자 생활정도에 따라서 호적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그것을 폐지를 하고 기간으로만 정했던 거죠? 기간만 경과되면 부과하는 금액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다시금 한달, 1개월이상 부과하던 과태료를 7일 이내로 부과하는 하나 더 늘은거죠, 그러니까?

○民願擔當官室長 李鍾淳 그렇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안결용위원님.

○安傑瑢委員 안결용위원입니다. 지금 송 련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7조 2항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이 3가지에서 4가지로 지금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7일 미만이 이렇게 기준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꼭 그렇게 해야만 될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이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출생해서 물론 바로 바로 신고할 수가 있는데 미처 경사스러운 기분으로 7일정도로는 신고를 미처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전에는 1월 미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7일 이내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해야만 될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民願擔當官室長 李鍾淳 예, 안결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망신고라든지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제신고는 신고기한이 발생일로부터, 그러니까 출생이나 사망을 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0일의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7일이라는 것은 30일이 지나서 37일까지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만원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일 이상 1개월 미만은 그러니까 30일 지나서 두 달 이상 실제적으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두 달이 되겠습니다, 1개월 미만은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만원을 부과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마는 이게 애당초 지난번에 개정될 때는 한꺼번에 1개월 미만으로 돼가지고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든 아니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든 금액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대법원에

일주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신고를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인데 7일 미만에 신고한 사람하고 30일 미만 신고한 사람하고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7일 미만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가지고 만원으로 하고 7일 이상 1월 미만은 2만원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사유발생일로부터는 실제 7일이 아니고 37일 미만이 되겠습니다. 30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고할 수 있는 여유가 촉박한 것은 아니고 한달 이상 기간을 주기 때문에 촉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安傑瑢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들어서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주민들이 생각할 때 7일 미만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제7조 범문에 대한 상세하게 조례 내용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쉽게 얘기해서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民願擔當官室長 李鍾淳 예, 올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의결하고 나서 홍보할 때 반상회보라든지 지역신문에 충분히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일 경과 이후 7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傑瑢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앞으로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얼핏 보기에 그냥 7일만 알지, 한달 7일로 안본단 말이에요. 또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尹晚丸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전 현행은 1월 미만만 됐는데 그러면 그것은 30일을 기준으로 했고, 이번 7일 미만은 37일을 의미합니까?

○民願擔當官室長 李鍾淳 예, 그렇습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37일이고 1월 미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미만이 되겠습니다.

○尹晚丸委員 그러면 3월 이상이라면, 3월 이상 6월 미만이라면 4개월 이상

○民願擔當官室長 李鍾淳 그렇습니다. 4개월 이상 7개월 미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尹晚丸委員 표기를 실질적으로 해주면 어

땡겠습니까? 그러니까 현행 개정령을 발생 일로부터 한달은 30일이 경과한 뒤로 라는 말을 넣어줘야 주민이 혼동이 안되지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7일이라고 하면 탄생된지 7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삽입을 해서 주민에게 홍보해 줬으면 합니다.

○民願擔當官室長 李鍾淳 예,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城北區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 (城北區廳長 提出)

(10時17分)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白亨煥 네,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宋 鍊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귀청하셔도 되겠조?

○委員長 徐化錫 민원담당관실장님 귀청하시죠.

3. 서울特別市城北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 (案)(城北區廳長 提出)

(10時25分)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蔡昇基 재무국장 채송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안설명서를 별도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宋 鍊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

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님.

○俞鎮武委員 유진무위원입니다. 우리가 개정하기 전에 세원과 개정하고 나서의 차이점을 분석하신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財務局長 蔡昇基 저희 구의 경우는 현재 제2조 2항 상이급수 3급에서 5급 그 분들 혜택외에는 나머지 조항에는 아직까지 저희 구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미리 해놓은 것인데, 그 사항의 경우 그 결정후 160만원이 추가 재원이 됩니다.

○委員長 徐化錫 160만원이 세수가 감소됩니까?

○俞鎮武委員 지금 여기 보면 26종에 110명에서 49종에 211명으로 증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110명에 대한 감면세액과 211명에 대한 감면 세액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나 나고 그 미치는 파장은 어느정도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賦課課長 金慶烈 부과과장이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俞鎮武委員 예, 말씀하세요.

○賦課課長 金慶烈 지금 57명이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차를 사서, 57명에 대한 면허세 감면된 것이 161만원 정도가 나와있습니다. 구세에 있어서 면허세 감면 받은 사람이 160만원인데, 이 조례개정안이 개정됨으로써 늘어나는 인원이 26종에서 49종으로 전부 늘어나는데, 그 인원수로 봐서는 101명이 늘어나가지고 전체가 2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1명이 전부 2천CC 이하의 차량을 구입한다라고 봤을 때 그 차종 면허세가 27,000원내지 더 큰 것을 산다고 해서 36,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면이 전부 산다라고 봤을 때 약 3백만원 정도가 감면의 혜택을, 그러니까 세입의 감소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를 전부 산다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101명이 늘어났는데 차를 사셨는지 안사셨는지 통계는 저희가 갖춰있지 않습니다.

○俞鎮武委員 그러면 그네들 100% 다 차를 샀을 때 감면혜택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賦課課長 金慶烈 감면혜택이 차를 다 산

다라고 봤을 때 약 3백만원정도가 세입에서

○委員長 徐化錫 최계락위원님.

○崔桂洛委員 최계락위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조례가 나와 있는데, 일반 장애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포함이 안됐는지요?

○賦課課長 金慶烈 장애자들 감면은 이미 되고 있습니다.

○崔桂洛委員 아니, 장애인 법에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느냐 이거죠?

○賦課課長 金慶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崔桂洛委員 일반 장애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내놓은 거죠?

○賦課課長 金慶烈 예, 그렇습니다.

○崔桂洛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안걸용위원님.

○安傑瑤委員 안걸용위원입니다. 제5조 제7호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은 현재 사회교육시설용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물들을 청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賦課課長 金慶烈 부과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이라고 그러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정식 문교부에서 인가한 정규 학교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국민들이 평생 교육을 받는 이런 모든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국가에서 설립한 데도 있고, 사립단체에서 설립한 데도 있고 뭐 학원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등록허가 모든 사회교육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의 4에 1호에 대한 사회교육시설이라는 의미가 포괄적인 의미가 되어 있고, 5조 2호에 한국노동교육법에 의한 설립된 한국 노동교육원 즉,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게 조정, 교육실습을 시키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세운 이런 학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을 시키고 건설교통부에서 세운 운수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립시키고 4호에서는 우리의 사회교육인 허가사항도 있고

등록사항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포함된다. 5호에는 박물관, 미술관 흔히 저희들이 많이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6호에는 도서관 이게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고 7호에는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과학관을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가 있는데 사립으로서 기업체에서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해당되는 것은 사립과학관을 의미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安傑瑠委員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내용에 말씀드렸듯이 5조에 7호까지 있어서 지금 다 보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도서관이라하면 도서관진흥법 뭐 이렇게 적용받아 가지고 도서관이라 하면 도서관은 대개 각 동별로 도서관이 이렇게 법인 설립을 해서 이렇게 된 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

○賦課課長 金慶烈 지금 저희 구청에서 도서관이라고 하면 저희 구청에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저희 구청관내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놓고는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문호를 개방을 해 가지고 법인이거나 사립, 개인이 허가를 받았을 때 우리 구청내에 복지시설 증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 지금 개방을 해 놓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安傑瑠委員 좀 얘기를 알기쉽게 사회 교육시설이다 하면은 대개 뭐 독서실, 도서관, 이런 학원 여러가지로 지금 포괄적으로 인식하기가 쉬울텐데 그럴 내용들은 구세감면조례에서 다 빠지고 그 대상되는 업체, 업종이 구체적으로 얼른 이야기하면 7호 서식까지 쭉 나와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런 제안설명 내용대로라면 본위원회부터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말로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쉽게 안 가서 구체적으로 내가 알기 쉽고 이런 것들을 전 지역 주민께 홍보가 되어 있어야 이런 것을 알지 이 뭐 조례 하나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이 개정되면 그런 혜택을 보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교육시설용이 지금 마련되어

야 될텐데 이게 좀 의문이 가고 생각이 바로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財務局長 蔡昇基 그 내용을 저희가 각 법 별로 그것을 밝혀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지금 각 법을 봐야 되는데 지금 설명드리기에 너무 추상적이라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安傑瑠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도 알고 이런 사회교육시설을 해서 감면을 받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식을 알아야지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財務局長 蔡昇基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국장님 부처보니까 이 조례는 '97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0일 이후에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財務局長 蔡昇基 그렇죠. 다시 개정을 해야죠.

○委員長 徐化錫 다시 개정이 되는 거죠?

○賦課課長 金慶烈 연장하거나,

○委員長 徐化錫 연장하거나 개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시적인 조례안이 내부부 준칙이 내려 온 겁니까? 이 조례안이.

○財務局長 蔡昇基 그렇습니다, 시에서.

○委員長 徐化錫 그렇다면 이것을 무슨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래도 최소한 5년을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한 10년을 해본다든가 해야 되는데 내년 12월 말까지라면 겨우 2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례안 만들때 많은 노인 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너무 짧은 기간을 조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賦課課長 金慶烈 제가 참고로,

○委員長 徐化錫 네, 부과과장님 말씀하세요.

○賦課課長 金慶烈 조례가 과거에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세법에 이렇게 보면 불균형과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1년 단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조례 이것이 제정이 된 것은 '94년도 12월달에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97년 12월까지면 3년입니다. 그래 이번 주기 단위면 3년 주기 단위로 3년 동안만 한시법으로 제정을 했다가 '97년 이후가 되어서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더 감면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시법으로 과거에서부터 지출을 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1년 단위였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3년 주기 단위로 한시법으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蔡昇基 추가말씀을 드리면 단 시간내에 각종 시설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연장 여부는 다음 기회에, 그러니까 적극 권장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간을 짧게 해가지고 그간에 빨리 추진해라 하는.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현위원님.

○申宗鉉委員 신중현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계로 4조2항에 신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 보고사항 관계와 우리 제안설명의 예를 든다고 하면 유료 노인정이라든지 또 사설 노인복지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설 노인정을 비롯해서 노인복지시설이 몇군데가 되는지 우리 성북구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賦課課長 金慶烈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기타 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財務局長 蔡昇基 이번에 시비를 따와 가지고 종암동에 노인복지 시설을 지금 지을려고 하거든요. 그게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이 조례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유료노인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세금을 감면해 준다,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감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申宗鉉委員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안걸 용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5조 4항에 사회교육시설 이 문제도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보면 국가에서 국가 보조도 해 줬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독서실이라든지 그외에 사회교육에 미치는 우리 주민에 대해 미치는 이런 교육시설은 지금 현재 조감법에 의해서 특혜를 받는 것인지 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賦課課長 金慶烈 그것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드린대로 각 1호에서부터 7호에 해당되는 사항, 이 사항을 현재 관계 보고서에 저희가 사례를 전부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지금 구청에서 등록허가한 사항만이 아니라 여타 정부기관에 등록허가한 사항까지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자료를 지참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申宗鉉委員 아까 말씀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행 사항으로 봐도 독서실 같은 경우에 조감법 특혜를 받는 것인지 그것을 더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행 독서실이, 독서실이 우리 성북구에 아마 수십개가 아니라 수백개가 될지도 모르니까.

○賦課課長 金慶烈 그것은 파악을 해서 확실하게, 지금 실무자하고도 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安傑瑤委員 그러니까 아까 답변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다 확인 파악하셔서 말씀들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추후 말씀하시겠다는 말씀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본위원이 또 생각키로는 대체적으로 교육용 연구시설이나 뭐나 법인 등기상에 건물관리 건축물 관리 대장 상에도 교육용 연구시설이라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신축을 하고 또 그렇게 다 지금 교육시설을 해 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반 시설들이 즉 감면대상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느 범주까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각 우리 관내만 해도 구민들이 알아야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시설들을 하고 지금 교육시설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교육에 전념을 할진대 이런 것들이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 이 마당에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답변을 안 하시고 우리도 지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묻는 사항이니까 철저히 확인을 해서서 다시 한번 알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財務局長 蔡昇基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올리고 홍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네, 김수영위원장님.

○金壽榮委員 저도 아까 안결용위원장님하고 신중현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메모를 했었는데 추가해서 이것이 우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학원이라든지 뭐 태권도 교육장 독서실은 물론이고 그리고 요새 붐을 이루고 있는 에어로빅 교실 같은 것 그런것이 여기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또 하나는 건물은 내가 가지지 않고 나는 어느 지금 말씀드린 열거한 이러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건물주가 아니고 내가 세 들어서 하고 있는데 해당 건축물 건물주가 이러한 사회교육시설을 유치했을때에 이것도 직접적으로 재산세나 종토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이것까지 포함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蔡昇基 감사합니다.

○賦課課長 金慶烈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확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은 세 감면이 비영리 법인체에서 하는 사회교육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 구분을 지금 실무자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

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지금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4分 散會)

○出席委員 11人

徐 化 錫	崔 東 煥	高 允 根
金 壽 榮	宋 夏 星	申 宗 鉉
安 傑 瑢	俞 鎮 武	尹 晚 丸
尹 弘 老	崔 桂 洛	

○缺席委員 2人

金 振 權	朴 時 俊
-------	-------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鍊
---------	-----

○參席公務員

總 務 局 長	白 亨 奭
財 務 局 長	蔡 昇 基
民 願 擔 當 官 室 長	李 鍾 淳
總 務 課 長	田 喜 久
賦 課 課 長	金 慶 烈